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서식] <개정 2019. 3. 25.> (www.budamgum.or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
신청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법인(주민・외국인)등록번호
	주소(사업장) (전화번호:)	

분할납부 신청사유		폐기물처분부담금 금액(원)

	횟수	납부기한	납부금액	비고
분할납부하려는 횟수 및 금액	제1회	5월 20일까지		
	제2회	7월 20일까지		
	제3회	9월 20일까지		
	제4회	11월 20일까지		

「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」 제19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・도지사
한국환경공단 귀하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분할납부 고지
신청인		처 리 기 관: 시・도 또는 한국환경공단						신청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